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21025(본소), 2022나21032(반소) 판결

[약정금 ·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청구의 반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21025(본소), 2022나21032(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230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손진홍, 김재연, 고석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주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변론 종결 2022. 7. 13.

판결 선고 2022. 9. 2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2308(본소), 2021가합52315(반소)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6,550,542원 및 그중 124,542,022원에 대하여는 2021. 2. 6.부터, 82,008,520원에 대하여는 2022. 4. 29.부터 각 2022.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587,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2,85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¹⁾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반소청구 중 84,014,750원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른 구상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587,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4,01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1.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하8행, 하7행의 "피해자와 보호자"를 "E과 그 보호자인 피해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10, 11행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12, 13행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의 판정을 구하는"을 "위 지급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판정을 구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하6행의 "원고 차량의 과실 30%, 피고 차량의 과실 70%"를 "원고의 책임비율을 30%,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보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하3행 내지 4쪽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바.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측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2446호)은 2018. 5. 3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256,487,213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그중 원고는 위 판결의 256,487,213원 인용 부분 중 1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및 그 취소 부분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다. 그런데 관련사건 항소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9234호)은 2019. 3. 29.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위 판결의 256,487,213원 인용 부분 중 34,678,0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고하였는데, 관련사건 상고심법원(대법원 2019다226432호)은 2019. 7. 25. 위 항소심판결의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 여부 및 책임제한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의 피해자 패소부분 중 85,321,938원(= 120,000,000원 - 34,678,062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 4쪽 7행의 "선행 판결"을 "관련사건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0행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한편 피고는 피해자에게 2015. 3. 30.부터 2019. 8. 27.까지 치료비로 89,459,390원, 2015. 6. 11. 가지급금으로 30,000,000원 합계 119,459,390원을 지급한 후, 2018. 9. 21.경까지 원고로부터 35,444,640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제1심판결 4쪽 13행 내지 하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자. 이 사건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상호협정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구상'이라 함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한 협정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공제계약자, 공제금수령자 등의 다른 협정회사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8. '구상금'이라 함은 구상의 권리행사로써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청구인'이라 함은 구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협정회사를 말한다.

10. '피청구인'이라 함은 청구인이 구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의 상대방인 협정회사를 말한다.

제17조(심의청구 및 심의절차의 개시)

① 이 협정에 의한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구상분쟁의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심의청구의 방식, 비용 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전원심의위원회의 심의)

② 전원심의위원회는 위 ①항에 정한 심의종결의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심의청구의 본안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전원심의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청취, 증거조사, 전문적 감정의견의 청취, 기타 필요한 심리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심리절차, 증거조사, 감정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소심의위원회의 심의)

제23조의 규정은 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 또는 회부된 심의청구 사건의 심의에 준용한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제28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13조(심의청구의 방법)

① 심의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아래에 적은 서류를 사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 1에 따라 작성된 심의청구서 1통 및 피청구인 수를 더한 수의 심의청구서 부분

제21조(심의절차 및 심의결정 등)

⑧ 위 제7항의 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심의조정결정서 : 협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심의대상사건 본안에 대하여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⑨ 위 제8항 제1호의 결정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이유 요지를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위 제8항 제2호의 결정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이유를 붙이거나 또는 붙이지 아니하고 작성하며, 그 각 결정서에는 소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가 지급한 모든 공제금 중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피고의 책임 비율(70%)에 대응하는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84,424,786원(=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 263,463,980원 × 70%)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인 148,837,650원을 공제한 35,587,13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호협정은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위 상호협정의 조항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심의결정금액 24,295,628원을 넘어서, 이 사건 조정결정 전후로 원고가 지급한 모든 공제금인 263,463,980원 중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피고의 책임 비율(70%)에 대응하는 금액인 184,424,78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호협정 제1조는, 이 사건 상호협정이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호협정 제2조 제7호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한" 협정회사가 다른 협정회사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구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9, 10호는 그러한 구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협정회사와 그 상대방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상호협정 제10조 제1항은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따르면 이 사건 상호협정은 협정회사 사이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유무 및 범위 등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일 뿐, 향후 '지급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에 관한 구상관계 등 '발생될'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상호협정 제17조 제1항은 이 사건 상호협정에 의한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심의청구의 방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청구서에 의하여 심의청구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심의청구서 서식(가령

갑 제8호증의 1)은 '청구인 주장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청구인 총지급액' 및 '청구금액'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 및 앞서 본 조항들에 따르면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청구인의 심의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지급액 중 피청구인에게 '구상'하여야 할 구체적 금액인 '청구금액'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주장 과실비율'은 청구인의 총지급액에서 청구금액(구상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 근거로서 기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상호협정 제28조 제1항 제1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호협정 제23조, 제24조,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21조 제9항에 의한 조정결정서 서식(가령 갑 제2호증) 중 '주문'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위 서식의 문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상호협정의 취지 및 그에 기한 심의청구의 취지에다, 이 사건 상호협정 제28조 제1항 제2문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결정의 주문'은 위 조정결정 중 그 주문 자체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심의결정금액' 부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조정결정 중 '심의결정 책임비율' 부분은 조정결정의 주문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심의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 근거 내지 이유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만일 이와 달리 위 조정결정 중 '심의결정 책임비율' 자체도 주문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 심의결정 책임비율 자체에 관하여 화해계약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동일한 보험사고의 전체 보험금 중 소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을 받아 그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향후 지급할 나머지 다액의 보험금의 구상에 관하여 전혀 다룰 수 없게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 내지 책임비율이 재판 절차에서는 판결의 이유 부분에 해당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위 조정결정에 판결의 기판력보다도 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서 일부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비율로 일부 구상금의 조정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 추가적으로 지급한 나머지 보험금에 관하여 사실상 동일한 책임비율로 심의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정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나머지 구상금에 관한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전자의 조정결정의 책임비율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을 부여할 실질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다.

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호협정에 기한 조정결정이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을 미치는 범위는 위와 같은 '심의결정금액' 부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정결정의 심의결정금액인 24,295,628원에 관하여만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조정결정의 심의결정 책임비율(원고 30%, 피고 70%) 자체에 관하여는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의 위 청구를,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약정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실제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취지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의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원고의 위 청구가 이유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구상금 148,837,650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2) 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화해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결정의 심의결정금액인 24,295,628원에 한하여 미친다. 나아가 피고 차량의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구상금 148,837,650원에서 위 24,295,628원을 제외한 124,542,02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조정결정은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분쟁의 전제에 관한 착오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조정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조정결정의 심의결정금액 24,295,628원[위 가)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상금 전액인 148,837,6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위 124,542,022원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화해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결정의 심의결정금액인 24,295,628원에 한하여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 차량에 의한 선행사고를 목격하고 도로에 들어가 E을 보살피다가 원고 차량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것이어서, 피고 차량에 의한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관련사건 항소심법원 및 상고심법원의 판결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중 위 24,295,6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구상금 148,837,650원에서 위 24,295,628원을 제외한 124,542,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24,295,628원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조정결정의 취소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상 화해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즉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2526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심의위원회가 2014. 10. 20.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피고 차량이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아 심의결정금액을 24,295,628원으로 정한 사실, 이후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화해계약에서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뿐,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조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호협정 제23조 제2항 및 나머지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심의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심의·결정하면서 그 증거조사 결과 등에 따라 쌍방 보험회사의 책임비율을 0%에서 100%까지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반드시 쌍방 보험회사의 책임비율을 일정 부분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쌍방 보험회사의 차량의 책임 비율뿐만 아니라 책임 여부 자체에 관하여도 심의·결정하게 되고, 위 책임 여부에는 위 차량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도 포함된다.

② 이 사건 조정결정서에는 심의결정사유로 "비가 내리는 밤에 보행자(E)를 치고 보행자 및 보호자(피해자)를 도로에 방치케 하여 2차 사고를 유발케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더 중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심의결정사유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결정은 피고 차량이 선행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조정결정의 심의 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갑 제8호증의 2)에는 '선행사고 직후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현장조치를 실시하였고 피고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과실비율도 '원고 100%, 피고 0%'로 기재되었다. 여기서의 '과실 여부' 및 '과실비율'은 좁은 의미의 주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함께 포함하는 '책임 여부' 및 '책임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심의 절차에서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도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진행된 피해자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측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참가이유로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그 구속력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한 주장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위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24,542,0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1. 2.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최종일 이후인 2019. 8.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의 청구 중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른 구상금 84,014,75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치료비 및 가급금으로 84,014,750원(=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19,459,39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35,444,64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고에게 위 84,014,750원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원고에 대한 그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원고에게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위 금원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84,014,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45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3)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회사가 면책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들로부터 보상금을 청구받고 보장사업자에게 위 법조에 의한 보상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들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위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는 채무자 아닌 보장사업자가 착오로 보험회사 등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선의로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보장사업자는 채무자인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험사업자 내지 보험자가 그 보험가입자 내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부존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위 법률조항에 의한 직접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신에게 위 법률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다른 보험사업자 내지 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여 결국 피해자의 다른 보험사업자 내지 보험자에 대한 위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3) 판단 가) 심의위원회가 2014. 10. 20.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피고 차량이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정한 사실, 피고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5. 3. 30.부터 2019. 8. 27.까지 치료비로 89,459,390원, 2015. 6. 11. 가지급금으로 30,000,000원 합계 119,459,390원을 지급한 후, 2018. 9. 21.경까지 원고로부터 35,444,640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한 관련사건 소송에서 2018. 4. 25. 이전4) 까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5) 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피고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위

89,459,390원 중 2015. 3. 30.부터 2018. 4. 25.까지 지급한 치료비는 87,453,160원, 2018. 4. 26.부터 2019. 8. 27.까지 지급한 치료비는 2,006,2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가지급금 합계 119,459,390원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35,444,640원을 각 항목별로 충당한 후 남은 피해자에 대한 지급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014,750원이다.

① 2015.3.30.~2018.4.25. 치료비	87,453,160원	8,188,550원	79,264,610원
② 2015.6.11.자 가지급금	30,000,000원	27,256,090원	2,743,910원
③ 2018.4.26.~2019.8.27. 치료비	2,006,230원	0원	2,006,230원
합계	119,459,390원	35,444,640원	84,014,750원

나) 이에 따르면, 피고는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피해자에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84,014,750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84,014,75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위 84,014,750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 행사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10. 7. 관련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피해자가 2018. 4. 25.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해자는 원고에 대한 위 84,014,750원의 채권 중 ① 채권(2015. 3. 30. ~ 2018. 4. 25. 치료비 79,264,610원)과 관련하여 관련사건 소송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해자는 불법행위일(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6.부터 그 손해가 현실화되었고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① 채권은 위 2013. 4.

6.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고, 이후 원고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4. 11. 11.(갑 제5호증의 1 참조) 원고의 채무승인이 있는 이후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까지 관련사건 소재기 외에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관련사건 소송의 청구금액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위 ① 채권은 위 2014. 11. 11.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7) 라) 이에 반하여 위 84,014,750원의 채권 중 ③ 채권(2018. 4. 26. ~ 2019. 8. 27. 치료비 2,006,230원)의 경우, 피해자가 관련사건 소송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련사건 소송 및 판결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위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나아가 피고 차량의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9. 3. 29. 이후 지급된 치료비의 경우, 피고가 착오로 원고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인 줄 알고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마) 위 84,014,750원의 채권 중 ② 채권(2015. 6. 11.자 가지급금 2,743,910원)의 경우, 관련사건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위 가지급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에서 위 가지급금을 공제하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원고로부터 별도로 위 가지급금 상당액을 또다시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에게 위 가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민법 제745조의 채권자 보호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민법 제745조 제1항의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위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법 제745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그렇다면 위 ① 치료비 79,264,610원 부분, ② 가지급금 2,743,910원 부분은 채무자 아닌 피고가 착오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가 선의로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82,008,520원(= 79,264,610원 + 2,743,91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구상금 청구가 포함된 2022. 4. 27.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4.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구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의 청구 중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06,550,542원(= 위 124,542,022원 + 위 82,008,520원) 및 그중 위 124,542,022원에 대하여는 2021. 2. 6.부터, 위 82,008,520원에 대하여는 2022. 4. 29.부터 각 2022.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박성남

판사김준영

1)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208,556,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질적·양적 일부 감축에 해당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

2) 피고는 아래 나)항을 주위적 주장(다만, 이 사건 조정결정 취소에 따른 148,837,650원 전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였다)으로, 아래 가)항을 예비적 주장으로 하여 이 부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화해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결정의 심의결정금액인 24,295,628원에 한하여 미치고, 그러한 취지의 가)항의 주장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주장으로서 나)항의 법률상 원인의 소멸 주장보다 먼저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가)항, 나)항의 주장을 병렬적으로 하는 것으로 선택함이 타당하다.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4) 관련사건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은 모두 동일하게 피해자의 청구에서 제외되는 기지급 치료비를 193,916,050원(= 62,625,240원 + 131,290,810원)으로 보고 있는바(갑 제3호증의 1, 2 참조), 그 구체적 지급일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련사건 제1심판결의 변론종결일이 2018. 4. 25.임을 고려할 때 2018. 4. 25. 이전까지 기지급된 치료비가 피해자의 청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관련사건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은 모두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피고의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기지급 치료비를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손해배상금액에서 '기지급 치료비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원고의 과실에 의한 부분'을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6) 을 제3호증 3~4쪽에 기재된 지급일자 순서에 따라, 위 구상금 35,444,640원은 2015. 3. 30.부터 2015. 6. 2.까지의 치료비 8,188,550원(= 51,800원 + 68,110원 + 16,620원 + 179,110원 + 205,520원 + 3,934,570원 + 3,505,810원 + 52,580원 + 174,430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7,256,090원(= 35,444,640원 - 8,188,550원)은 2015. 6. 11.자 가지급금 30,000,000원에 충당된다.

7) 한편 원고는,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1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함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34,678,062원보다 더 큰 손해배상액을 결과적으로 추가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는 원고로부터 위 치료비 79,264,610원을 모두 지급받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원고에 대한 위 치료비 79,264,610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 소송의

청구금액에서 2018. 4. 25. 이전까지의 기지급 치료비는 제외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항소로 원고가 85,321,938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그 추가 지급 부분은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었던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일 뿐, 관련사건 소송에서 청구되지도 않은 위 치료비 79,264,610원의 지급 의무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